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1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김승수 · 윤재옥 · 김용판

강대식 • 이주환 • 김성원

이종성・추경호・유경준

홍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,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'핫 100'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,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 중 "음반등의"를 "음악공연, 온라인 음악공연 및 음반등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	제12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
원) ① (생 략)	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	②
<u>등의</u>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	<u>공연, 온라인 음악공연 및 음반</u>
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	<u>등의</u>
작, 해외마케팅・홍보활동 지	
원, 외국인의 투자유치, 국제음	
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	
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	
을 지원할 수 있다.	
	<u>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